OECD - 디지털세 논의 Pillar 1, 2 Blueprint 공개

■ **OECD는 2020년 10월 12일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국가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Pillar 1, 2 Blueprint를 공개함[1)]**

○ 해당 보고서는 2019년 10월 및 11월에 공개된 Pillar 1, 2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개정한 것임

○ OECD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0년 12월 14일까지 수렴하여 2021년 1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

○ OECD/G20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를 2021년도 중반으로 연장할 것으로 발표함

■ **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Pillar 1의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음[2)]**

○ Pillar 1의 핵심 구성요소를 Amount A, Amount B, 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였음

○ Amount A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부분을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으로 배분하는 것임

- 대상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함
- 글로벌 매출액 및 국외 대상 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함
- 과세연계점이 발생하는 최소 매출의 기준 금액을 적용함
- 시장소재지국으로 귀속할 매출액은 세부 업종별 지표에 따라 계산함
-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함
- Amount A 과세이익은 이익률에 따라 초과이익을 계산한 뒤 배분

1) OECD, http://www.oecd.org/tax/beps/international-community-renews-commitment-to-address-tax-challenges-from-digitalisation-of-the-economy.htm, 검색일자: 2020. 10. 21.
2) 기획재정부, http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51788&menuNo=4010100, 검색일자: 2020. 10. 21.

율에 따라 시장소재지국 배분 대상 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함

○ Amount B는 다국적기업 국외 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 및 홍보활동에 대해 고정세율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임

○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를 개발함

■ **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Pillar 2의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음**

○ Pillar 2의 핵심 구성요소를 세원잠식방지 규칙, 원천지국과세 규칙, 규칙 간 적용순위 등 조정으로 구분하였음

–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과 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세분화하였음

○ 대상 기업은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해당하며,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[3]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함

○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(Top-up Tax)으로 과세함

–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부분은 고정률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

○ 소득산입 규칙의 경우 저세율 국가 소재 국외 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거주지국에서 지분율만큼 추가 세액을 부담함

○ 비용공제부인 규칙의 경우 저세율 국가 소재 구성회사에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원천지국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함

○ 규칙의 중복 적용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순위를 조정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정다운 회계사>

3) 2020. 10. 28. 원화 환산 시 약 9,990억원임.